2010. 11. 2.(화)

검 토 보 고 서

「 학교 급식소 식판 위생관리 조사연구」
의원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

의회운영위원회
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-

1. 추진개요

가. 근 거 :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나. 추진경과

- 2010년 의원연구활동 지원계획 : '10. 2. 4.
- 2010년 하반기 의원연구활동 추진계획 : '10. 7. 6.
- 의원연구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접수 : '10. 10. 27.
- 제295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: '10. 10. 29.

다. 신 청 자 : 교육위원회 최미애 의원(개인)

2. 연구활동계획

가. 연구과제명 : 학교급식소 식판 위생관리 조사연구

나. 주요내용

○ 구 성 의 원 : 최미애 의원 개인연구
○ 연 구 배 경 : 어린이들의 급식 이후 식판 위생상태 조사
○ 연 구 일 정 : 2010. 11월말까지(규칙 제7조)
○ 연구활동비 : 1,000,000원(샘플 조사비, 100천원 × 10학교)
○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
- 수원대 배재흠 교수팀에 용역 의뢰
- 도내 초등학교(6개소), 중학교(4개소) 급식소 대상 식판 샘플 수거 후 연구소 전달
- 식판 위생세제 잔류량 검사(15일 정도 소요예정)
- 연구결과서 통보 후 결과 공개

3. 검토의견

○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실행을

앞두고 있는 상황에서

○ 도내 학교급식소의 위생상태를 조사하여 간과하기 쉬운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

○ 대부분의 학교급식소 위생상태를 보면 단시간에 대량의 그릇을 씻어야 하는 급식형편상, 헹굼과정이 부실해 세척 후 유해성분이 상당량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

○ 따라서 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다만, 입법기관으로서 연구조사 결과가 관련조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
4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나.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

제3조(등록) ① 의원 및 연구단체가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등록을 할 수 없다.

③ 의원 또는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심의위원회) ①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
② 심의위원회 운영은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③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1.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
2. 연구활동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
3.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보고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연구활동 기간) 의원 또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의결을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당해연도 11월 말까지로 한다.

제8조(연구활동비 지원) ① 의장은 의원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중 일부를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활동비에 지원할 수 있다.
②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,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한다.

제9조(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 등) ① 의원 또는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수용비, 공공요금, 용역비, 임차료, 급량비, 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8조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승인 심의의결 통보를 한 때에 연구활동비 지원 총액의 50%범위 내에서 지급하고, 잔액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심의위원회 승인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.

제11조(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12월 1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각 1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구활동비 정산서에는 별표 1의 연구활동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